202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 안내

1.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

○ 제출기한

- 사업실행계획서 또는 사업포기서 제출 (민간단체 → 소관부서)

  : 2020. 4. 20.(월)까지

-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(소관부서 → 민간단체, 공동체협치담당관)

  : 2020. 4. 27.(월)까지

○ 제 출 처 : 사업담당부서 검토·승인 → 공동체협치담당관 송부

○ 사업실행계획서는 **결정된 보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율을 적용**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 추진계획, 사업비 월별 집행계획 등을 수정・보완하여 제출

※ 자부담은 결정보조금 대비 5%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, 당초 사업신청서의 신청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

○ 이행 의무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,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포기 시 기간 내 서면으로 사업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

※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형 행사 및 교육 등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, 기존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·제출해주시기 바람

(교부신청 전 정식 사업포기 시 차년도 선정에 있어 불이익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)

2. 보조금 교부 신청

○ 교부원칙 : 2회 분할 교부(상·하반기) → 1차(60%), 2차(40%)

- 일회성 행사, 3개월 미만 사업, 1천만원 미만 사업비 일괄 교부
- 사업수행자(보조금 지원단체)는 월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제출

○ **신청기간 : 매월 1일 ~ 10일한** *기한 내 미 신청 시 수시 교부 없음

- 사업부서에 신청 → 공동체협치담당관, 회계담당관 협조 → 교부

※ 보조금 교부 처리절차에 따라 최종 교부까지 일정 소요기간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일 전월 10일한 교부신청

○ **신청방법** : 자부담액을 선(先)입금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사업부서에 제출

- 보조금 교부신청 전 **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과 체크카드 발급 (농협 시청점)**

  단, 기존 보조금 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잔액 “0원” 처리 후 사용 가능

- **자부담액**은 보조금 신청액에 대비하여 선(先)입금(일괄교부 시 전액, 분할교부 시 1차 60%, 2차 40%) 후 사본 제출

  ※ 자부담액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지원 취소될 수 있음

○ **교부시작 : 2020. 4. 28. (화) ~**

○ 구비서류

- 2020년 사업비 집행 안내자료 및 관련 서식

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(소통참여>비영리단체>자료실) 게재(2020.4.10.예정)

1차 교부 신청 시	**2차 교부 신청 시**
1.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(서식 1) 2. 보조금교부신청서(서식 2) 3. 사업실행계획서(서식 3) 4.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계획서(서식 4) - 보조금 분할교부 신청 시 5.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(서식 5) 6. 청렴이행서약서(서식 6) 7. 이행보증보험증권(원본제출) - 실행계획서 승인 이후 보조금 신청 시 가입 - 보증기간 : 사업기간+3개월 가산 * 예시 : 2020. 4월 ~ 2021. 3월 * 서울보증보험 인천점(☎876-8644) 8. 보조금 및 자부담 체크카드 사본 - 농협 시청점 체크카드 발급 - 반드시 **시 보조금카드로 신청** 9.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사본 -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자부담액 선입금 내역 확인	1.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(서식 1) 2. 보조금교부신청서(서식 2) 3.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계획서(서식 4) 4. 사업비 집행실적(서식 7) 5. 자부담 통장사본 - 자부담액 선입금 내역 확인
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중도 변경 시	
- 변경승인신청 공문(서식 8) 작성 후 시 사전 승인 요청	